

부산지방법원 2017. 8. 29 선고 2016가단3193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백진규, 유형준

피 고 1. B협회

2. C

3. D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훈

변론 종결 2017. 8. 8.

판결 선고 2017. 8. 29.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협회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5. 12. 21. 접수 제1702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B협회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5. 12. 21. 접수 제1702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C, D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2. 5. 접수 제124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7. 12. 24.,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관하여 1999. 6. 29. 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제1부동산 관한 소송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과

1) 피고 B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208865호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원고에 대하여 소장 부분 등이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2015. 11. 11. '원고는 피고 협회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2) 피고 협회는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 12. 21. 접수 제17028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그 후 원고는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하였고, 원고의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져 부산지방법원 2016나43213호로 항소심 소송이 진행되었고, 2016. 10. 21.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협회의 소가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4) 피고 협회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6다268145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1. 25. 심리불속행 판결로 피고 협회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소송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과

1) 피고 협회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209202호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원고에 대하여 소장 부분 등이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2015. 10. 28. '원고는 피고 협회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다만 주문에는 분할 전 토지 면적이 기재되어 있다).

2) 피고 협회는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 12. 21. 접수 제17028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2. 5. 접수 제12446호로 2016.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그 후 원고는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하였고, 원고의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져 부산지방법원 2016나43220호로 항소심 소송이 진행되었고, 2017. 5. 25.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협회의 소가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2017. 6. 2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협회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피고 협회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원고가 아닌 원고의 행세를 하는 E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적법한 소송대리권이 결여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정인이 E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적법한 소송위임을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적법한 소송대리권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 협회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협회가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한 위 각 1심 판결은 모두 각 해당 항소심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피고 협회가 위 각 1심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12. 21. 접수 제1702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12. 21. 접수 제1702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원인무효의 등기이고, 그에 터잡아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협회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 협회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자로서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피고 협회 명의의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협회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협회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C, D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 C, D은 피고 협회 명의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하고 피고 협회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피고 협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사정을

몰랐던 선의의 제3자인 자신들의 소유권이 전등기는 유효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우리 법제에서는 원인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다시 등기를 이어받았다면 그 명의의 등기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협회의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피고 C, D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등기부 내용을 신뢰하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더라도 그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기진석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1. 부산 기장군 임야 3471㎡
2. 부산 기장군 임야 4299㎡, 끝.